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

타법개정 · 공포 2025-12-30 · 시행 2026-07-01 ·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
📌 개요 — 언제, 무엇이

규정명	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
구분	법령·법률 · 타법개정
공포일	2025-12-30 (제21263호)
시행일	2026-07-01
소관	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
📍 간략 소개

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.

✍️ 제·개정 이유 (원문)

◎법률 제21263호(2025.12.30)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
[본문 생략]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9항 전단 중 "「의료기기법」 제28조"를 "「의료기기법」 제28조의3"으로 한다.

🇰🇷 영향 분석 REGNA 편집 해석

-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·시행일 확인 후 관련 절차 반영
- 원문 조문으로 구체 요건 확인 필요

✅ QMS 시스템 영향 체크포인트 REGNA 편집 해석

- 관련 품질·규제 문서의 최신성 점검
- 변경관리로 규정 개정 추적
- 원문 기준 영향 평가 수행

※ 조문 전문은 '원문 출처'(국가법령정보센터)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